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비용 지원

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예방 시설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.



지원대상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」에 따른 산업단지*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(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협의체 등), 사업주단체,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
 - *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



🔛 지원금액

- **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**(공단 판단금액의 50%)
 - * 기 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하며, 건물건축비, 관리비 및 운영비는 지원 제외





지원품목

- 안전보건 자료실, 상담실(자료게시대, 책장, 상담용 책상, 의자, 컴퓨터, 냉난방시설)
- 안전보건 교육시설(영상·방송장비, 책상, 의자, 교육용 컴퓨터, 체험교육설비, VR등 가상체험 설비, 냉난방기)
- 체력증진시설(헬스장·탁구장·풋살장·배드민턴장·테니스장·수영장·에어로빅실, 냉난방시설)
- 목욕·샤워·세탁시설
- 휴게시설

- ❶ 설치된 시설은 비영리 및 **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**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필요
- ② 지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이상(5년)으로 적정 유지·관리 필요
- ③ 산재예방시설 설치 공간은 신청인이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함 - 현재 시세기준 월세(5년치)를 자부담금(매칭비용)으로 인정
- 설치·공사비용은 신청자의 자가건물이거나 소유주가 국가·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5년간 해당 건물(토지)의 사용에 관해 소유주와 협의된 것이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⑤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



지원절차

자금지원신청

산업단지

투자계획 확인

보조금 결정

시설개선

산업단지

투자완료 확인

보조금 지급



신청방법

○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(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)에 우편 및 직접 방문제출

제출서류 〉산재예방시설지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

서식다운 > 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▶ 클린사업 안내

▶ 서식모음 및 자료실



시행기간

○ 연중수시 (재원 소진시 까지)



주요 Q&A

①1)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
- ☞ 총 소요금액(보조대상품을 취득·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) 중 공단에서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(공단 판단금액)의 50%를 지원합니다.
 - ※ 공단 판단금액은 건물 건축비, 관리비 및 운영비,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, 지원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부 삭감되어 총 소요금액 보다적을수있음

02) 지원금은 선금으로 받나요?

- ☞ 지원결정금액의 70% 이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하고 잔금은 시설의 설치 완료 확인 후 지급합니다.
 - ※ 이행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

03) 이행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?

- ☞ 부득이한 경우 지원 사업장에서 환수사유 발생 시, 전문기관을 통한 환수 진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, SGI서울보증 보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보조지원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제출

(Q4) 제출서류인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?

☞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·운영방안, 매칭비용 부담방안, 전문 인력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,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Q5) 설치 장소의 월세금도 지원가능한가요?

- 지원 불가합니다. 다만, 사후관리기간(5년)에 해당하는 월세금을 현재 시세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부담금(매칭비용) 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 - » 임대 장소 인 경우 실제 계약서 상 월세금액이나, 전세의 경우 주변 월세 시세로 산정
 - » 신청인소유건물 인 경우 인근 유사 건물의 시가 등으로 산정하여 자부담금(매칭 비용)으로 인정
 - ※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경우는 불인정

지원사례









공단직원의 금품·향응 수수, 공급업체의 페이백 권유 등 부패행위는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청렴윤리신고센터 또는 052-245-8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